(별지 제30호 서식)

처리기간 : 즉시

개 별 담 보 제 공 서

※신청번호 :				
담보 제공자	상 호		대 표 자	
	주 소		전 화 번 호	
	사업자등록번호		통관고유부호	

※ 담보요구부서	담당	주무	과장
[제세산출 및 담보기간 확인]			

관련신고번호(란번호)	신고일자	HS부호	품명	규 격

수량		산출세액	요담보액	제세 × % =
과세가격		관세 : 부가세 : 기타 : 합계 :	담보제공 사유	
관세율	%		담보제공 기간	

※ 담보관리부서	담당	주무	과장
[담보물 확인]			

담보물				
	제 공 금 액		담 보 종 류	
	제 공 기 간		제 공 사 유	
	(보증)유효기간		발행 기관 및 번호	

※ 담보해제시 지급계좌 내용

계좌번호	예금주(법인)	담당자	전화번호	지급은행・지점명

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0조 및 「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7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 관 장 귀 하

첨부서류	
	1. 담보물 및 담보물 평가자료 2. 위임장(위임의 경우에 한함) 3. 통장사본 4. 사업자등록증, 인감증명서(필요한 경우에 한하며,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)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및 제38조,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(사업자등록증,인감증명서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※ **담보용도 :**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,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,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, 보세구역외장치・보세운송신고・승인, 수입신고전물품반출 등

※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담보제공사유가 2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사유를 모두 기재하고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